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 지급 규정

## 제1조 (목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의 연구회를 대상으로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임상 및 기초 연구과제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학발전 및 국제적 의학연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국제 첨단의학 의료환경에 부응하는데 있다.

## 제2조 (명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라 한다.

## 제3조 (연구비 지원규모)

각 연구회는 단수 혹은 복수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총 연구비 지원은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고, 선정 연구 과제수는 3과제 내외로 한다. 연구 과제 중 1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지원 연구분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에서 신청한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여러 연구회, 타 기관 또는 타 학회와의 공동 연구도 가능하나, 공동연구 책임연구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회장이 수행해야 한다. 5천만원 이상의 연구비는 전향적, 다기관 공동 연구 분야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하되, 임상 연구에 한해서는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연구 기산점은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비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다년도 연구인 경우, 연구계획 변경을 통하여 2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기간 연장에 대해 연구책임자는 연구 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 제6조 (신청자격)

- (1)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시기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2)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1명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한다.
- (3) 연구회 연구비로 선정된 연구회는 해당연구가 종료되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영문학술지인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에 연구결과 보고서가 게재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4) 신청한 연구 과제는 타 학술 연구비 지원 기관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제7조 (심사위원회)

-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 정규 심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차 심사위원회는 학술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학술이사가 추천한 학술이사를 포함한 학술위원 5인과 연구이사가 추천한 연구위원 5인이 심사위원이 된다.
  - 2차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어 임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2) 학술이사는 연구회 연구비 연구 과제를 접수 완료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정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임시 심사위원회는 연구비 수혜 이후 연구 계획 변경을 포함한 기타 사항을 검토 및 승인하며, 학술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학술이사가 추천한 학술이사를 포함한 학술위원 3인과 연구이사가 추천한 연구위원 3인이 심사위원이 된다.
- (4) 임시 심사위원회는 계획 변경 요청 접수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회신한다.
- (5) 정규 및 임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3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8조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연구회 연구비 공모과제 선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2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학술이사가 1차 심사위원장이 되고, 2차 심사는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어 심사한다.

- (1) 1차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평가서에 의거하여 각 심사위원들이 서류 평가와 구두발표평가를 하고, 공모과제별로 최고 평가점수와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2배수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 (2) 2차 심사는 이사장이 소위원회 심사위원장이 되어 선정된 2배수 과제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단, 선발과정에서 수상 연구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를 학술연구비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 (공모과제 신청서류) ; 10페이지 이내

- (1) 공모과제 신청서
- (2) 연구계획서
- (3) 연구실적
- (4) 기타 증빙서류
- (5) 연구회 회장님 추천서
- (6)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제10조 (연구비 지급 방법 및 편성 기준)

- (1) 연구비는 연구회 연구비로 선정된 후 총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 (2) 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기술정보비, 재료비 (연구 기자재비, 시약 및 재료비, 전산 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기술 정보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연구계획의 변경 및 승인)

- (1) 연구계획변경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는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연구 계획변경에는 연구과제의 중단, 연구 목표(내용)의 중대한 변경, 책임 연구기관 변경, 연구 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한다.
- (3)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연구 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 할 수 있다.
- (4) 연구 계획 변경 시, 연구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 중단 시 연구비 집행내역,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목표(내용)의 변경 시 변경된 계획서, 비교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연구비 수혜에 따른 의무)

- (1)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연구기간 종료 후 첫 번째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영문학술지인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TRD)"에 게재하여야 한다.
- (2) 연구비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의 연구인 경우, 연구 결과와 관련된 2편 이상의 논문을 trd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내용의 특성상 여러 편의 논문 산출이 힘든 경우는 당해 연구비 심사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1편을 보고할 수 있다.
- (3)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반드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 : supported by grant No.(KATRD-S-2013-1) from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4)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연구비 신청을 할 수 없다.
- (5) 연구비 환수
  - 제4조, 제6조, 지원 연구분야나 연구비 신청자격을 위반한 경우
  - 연구결과의 구두발표나 논문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동일한 연구결과를 TRD와 타 학술지에 이중 게재한 경우
  - 연구비를 연구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연구 과제의 중단 및 승인받지 못한 중대한 연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비 환수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연구회 연구비 임시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비 반환 여부 및 환수 액수를 결정한다.

#### 제13조 (기타 사항)

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14조

본 규정의 개정은 학술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 1) 본 규정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2) 본 규정은 2013년 10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3) 본 규정은 2016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4) 본 규정은 2017년 1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5) 본 규정은 2017년 9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6) 본 규정은 2022년 7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7) 본 규정은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8) 본 규정은 2023년 9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